



제9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 의안번호 제4126호

2024. 8. 27.

교육안전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I. 심사경과

- 의안번호 : 제4126호
- 제출자 :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 제출일자 : 2024년 8월 16일
- 회부일자 : 2024년 8월 19일
- 상정일자 : 2024년 8월 27일
- 의결일자 : 2024년 8월 27일
 - 제9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안전위원회
- 의결결과 : 원안가결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가. 중등교사 임용시험 중 실기평가가 포함된 시험의 응시수수료를 폐지하여 응시생의 심리적·경제적 부담 완화, 타 교과와의 형평성 문제 개선 및 업무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별표1]의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 선정경쟁 시험수수료 중 실기평가가 포함된 시험 응시수수료 폐지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수수료 징수 금액(제3조 관련) (단위: 원)					[별표 1] 수수료 징수 금액(제3조 관련) (단위: 원)				
구 분	종 류	기 준	수 수 료	비 고	구 분	종 류	기 준	수 수 료	비 고
1.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 선정경쟁 시험수수료	1. 응시수수료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 선정경쟁 시험수수료	응시수수료	1인당	25,000	
	가. 일반시험	1인당	25,000						
	나. 실기평가가 포함된 시험	1인당	35,000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21조(붙임 2)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그 밖의 사항

1) 신·구조문대비표(붙임 1)

2) 입법예고: 2024. 7. 10.(수) ~ 7. 30.(화) [20일 간], 특이사항 없음

3) 부서협의

- 규제심사: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조직예산과-106, 2024.7.3.)

-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감사관-4164, 2024.7.2.)

- 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미래기획관-139, 2024.7.5./2024A세종교육-018)

4) 비용추계 현황: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붙임 3)

5) 법제심의위원회: 원안가결(조직예산과-1098, 2024.8.9.)

Ⅲ. 검토의견

1. 개정목적

- 본 조례안은 중등교사 임용시험 중 실기평가가 포함된 시험의 응시 수수료를 폐지하여 응시생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타교과와의 형평성 문제 개선 및 업무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 선정경쟁 시험수수료 중 실기평가가 포함된 시험 응시수수료 폐지

- 실기평가가 포함된 교과목의 응시수수료도 일반교과와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 폐지

3. 검토의견

가. 현재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 선정경쟁 일반시험 응시수수료는 25,000원씩 징수하고 있으며, 2차 실기시험 응시자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실기시험 당일 현장에 10,000원을 현금 납부하고 있음

- 참고로 최근 6년간(2019~2024) 실시한 교육공무원임용시험 실기·실험평가 응시수수료 징수액은 총 242만원으로 년평균 약 40만원 정도임

참고 사항1

○ 2019~2024학년도 실기·실험평가 응시수수료 현황(세종)

(단위: 명, 원)

과목	응시인원					
	'19학년도	'20학년도	'21학년도	'22학년도	'23학년도	'24학년도
물리	5	6	0	5	6	9
화학	5	6	0	5	7	7
생물	5	5	3	5	8	8
지구과학	6	4	3	5	8	9
체육	8	9	11	8	13	11
음악	5	6	5	3	5	5
미술	3	5	5	10	0	0
합계	37	41	27	41	47	49
응시수수료 총액	370,000	410,000	270,000	410,000	470,000	490,000

나. 금번 개정안은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 선정경쟁 시험수수료 중 실기평가가 포함된 교과목의 응시수수료를 일반교과와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 [별표1]의 실기평가가 포함된 시험의 1인당 수수료 35,000원을 폐지하여 모든 응시자에게 1인당 25,000원의 수수료를 책정하려는 것임

- 다. 이는 과목별 응시자의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실기과목 응시자의 부담을 줄여 시험 응시의 진입 장벽을 낮추려는데 의의가 있음
- 라. 또한 지방자치법 제154조(수수료)제1항에 따라 실기과목 응시자에게 면제가 아닌 시험을 응시하기 위한 수수료를 최소한으로 책정 및 징수함으로써 수험생 유인, 응시율 제고, 수수료징수 업무의 효율성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 마. 현재 타시도교육청 중 서울,광주,충북,충남교육청에서는 동일한 응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에 세종교육청에서도 선제적으로 응시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징수업무의 통일성을 기하려는 것으로 판단됨
- 바. 다만, 실기시험 수수료가 다소 경감됨에 따라 그만큼 수입액이 감소되는 바, 실기시험에 필요한 재료, 기구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명확히 파악하여 부족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사. 아울러, 관련 내용의 개정에 따른 시행이 자칫 2025학년도 교육공무원임용 선발시험 시기에 추진되어 자칫 혼돈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사전예고 등 수험생의 혼란이 없도록 적극 홍보해야 할 것임

참고 사항2

○ 타시도교육청 임용시험 응시수수료 현황

(단위: 원)

시도 교육청	응시수수료		부과 근거	비고
	일반시험	실기·실험 포함시험		
서울	30,000		서울특별시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응시 수수료 징수 조례	실기시험 미구분
부산	25,000	35,000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대구	25,000	35,000	대구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인천	25,000	35,000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광주	25,000		광주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실기시험 미구분
대전	20,000	30,000	대전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최저 금액 (개정 검토중)
울산	25,000	35,000	울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세종	25,000	35,000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경기	25,000	35,000	경기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강원	25,000	35,000	강원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충북	25,000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실기시험 미구분
충남	25,000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실기시험 미구분
전북	25,000	35,000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수수료 징수 조례	
전남	25,000	35,000	전라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경북	25,000	35,000	경상북도교육감 소관 수수료 징수 조례	
경남	25,000	35,000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제주	25,000	35,000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IV. 토 론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가결

VII. 소수의견 : 없음

VIII. 기타사항 : 없음

【참고자료】

붙임 1. 개정조례안

붙임 2.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3. 관계법령

붙임 4.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5. 현행조례

문 의 처
044)300-7510

붙임 1 **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조례 제 호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수수료 징수 금액(제3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종 류	기준	수수료	비 고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 선정경쟁 시험수수료	응시수수료	1인당	25,000	

붙임 2

신 · 구조문 대비표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수수료 징수 금액(제3조 관련) (단위: 원)					[별표 1] 수수료 징수 금액(제3조 관련) (단위: 원)				
구 분	종 류	기 준	수 수 료	비 고	구 분	종 류	기 준	수 수 료	비 고
1.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 선정경쟁 시험수수료	1. 응시수수료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 선정경쟁 시험수수료	응시수수료	1인당	25,000	
	가. 일반시험	1인당	25,000						
	나. 실기평가가 포함된 시험	1인당	35,000						

관 계 법 령**☑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21조(응시수수료) ①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할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를 내지 않을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를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을, 제2호와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낸 응시수수료 전액을 각각 반환해야 한다.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2. 시험실시기관에 책임이 있는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3. 시험실시기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응시 의사를 철회한 경우

☑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제3조(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 ① 수수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험 수수료
2. 삭제 <2019.2.11.>
3. 정보공개 수수료

② 수수료의 징수금액은 별표 1, 별표 2와 같다.

제4조(수수료 징수 방법) ① 수수료는 별표 1, 별표 2에 따라 정보공

개를 청구할 때에는 그 청구자에게, 시험·고시를 지원할 때에는 그 지원자에게 징수한다.

② 수수료는 현금이나 전자지불방식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③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과오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 한다. 다만,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공고한 환급기간에 응시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환급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항제1호의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됨

3. 미첨부 사유

- 중등교사 임용시험 중 실기평가가 포함된 시험의 응시수수료 면제로 연평균 410천원 가량의 수입액이 감소하나, 이는 응시자 부담액으로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서 미첨부

4. 작성자 : 행정국 재무행정과장 구중필

현 행 조 례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 및 제156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및 산하기관과 각급 학교에서 징수하는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1.10., 2022.2.21.>

제2조(적용범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징수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

- ① 수수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험 수수료
 2. 삭제<2019.2.11.>
 3. 정보공개 수수료
- ② 수수료의 징수금액은 별표 1, 별표 2와 같다.

제4조(수수료 징수 방법)

- ① 수수료는 별표 1, 별표 2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에는 그 청구자에게, 시험·고시를 지원할 때에는 그 지원자에게 징수한다.
- ② 수수료는 현금이나 전자지불방식으로 징수할 수 있다.
- ③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과오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 한다. 다만,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공고한 환급기간에 응시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환급하여야 한다.

제5조(수수료 징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징수를 면제한다.<개정 2013.7.10., 2016.8.10., 2021.11.10.>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2. 별표 1의 시험·고시 지원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다만, 수수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이를 증명하는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교육감이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칙 <제1906호,2022.2.21.>(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